

# 감 사 원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서울대학교 교수의 겸직에 따른 보고의무 등 미이행

소 관 기 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조 치 기 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 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는 소속 교수가 민간업체의 사외이사 등 겸직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원의 자격 및 허가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위 지침 제7조에 따르면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해당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sup>66)</sup>의 일정부분(연 2천만 원 초과 금액의 15%)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sup>67)</sup>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 내역과 발전기금 출연사항에 대하여 매년 소속 학(원)장<sup>68)</sup>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금전적 지원 내역을 보고하고 발전기금을 출연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66)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금액의 합

67) 2015. 12. 1. 지침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항으로 2016년부터 시행됨

68) 2018. 9. 10. 소속 학(원)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침이 개정됨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sup>69)</sup>에 따라 겸직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수에게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안내할 뿐 그 이행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10. 10.~10. 30.) 중 겸직허가를 받아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 교수 대상으로 2016년과 2017년의 금전적 지원 내역 보고 및 발전기금 출연 여부를 확인<sup>70)</sup>한 결과, [별표] “금전적 지원 내역 미보고 및 출연금 미납 현황(2016~2017년)”과 같이 2018. 10. 24. 현재 의과대학 ●교수 AY 등 12명이 겸직한 업체로부터 계 13억 4,102만여 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서울대 발전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출연금은 계 1억 1,071만여 원이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소속 ●교수<sup>71)</sup> AY는 2013. 6. 10. 주식회사 □□의 이사로 겸직 허가받아 겸직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16년 3억 2,851만여 원, 2017년 6억 881만여 원<sup>72)</sup>의 금전적 지원<sup>73)</sup>을 받았는데, AY는 의과대학 교무행정

---

69)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이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 내역 및 발전기금 출연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70)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의 보고 대상은 2016년의 경우 250건(인원수 206명), 2017년의 경우 275건(인원수 231명)임

71)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2조와 「서울대학교 기금교원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기금교원으로서 외부기관 등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총장이 교원으로 임명함

72) 2018. 5. 3. 감사원이 출연금 납부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자 AY는 같은 해 6. 4. 의과대학 교무행정실에 2017년 금전적 지원 내역을 보고하고 6억 881만여 원에 해당하는 발전기금 8,850만 원을 납부함

73)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금액 기준

실로부터 2017. 1. 12.과 2017. 5. 12. 2016년의 금전적 지원 내역 등<sup>74)</sup>을, 2018. 2. 9. 2017년의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을 각각 보고하도록 안내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겸직허가를 받은 교수가 금전적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에도 서울대는 그 이행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겸직 교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대는 금전적 지원 내역 보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겸직교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 ①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제7조를 위반하여 금전적 지원 내역 보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같은 지침 제8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겸직교원이 금전적 지원 내역을 보고하고 발전기금을 출연하는지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74) 2018. 10. 24. 감사원이 출연금 납부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자 AY는 같은 날 의과대학 교무행정실에 2016년 금전적 지원 내역과 발전기금 출연 대상액이 4,627만 원임을 보고함

[별표]

**금전적 지원 내역 미보고 및 출연금 미납 현황(2016~2017년)**

(단위: 원)

연번	겸직 연도	소속	직급	성명	겸직기관명	금전지원 총액	출연대상 금액	보고여부	출연금 납부 여부	출연금 미납 금액
계		12명			12개	1,341,029,317	159,154,397	보고 6건 미보고 9건		110,714,397
1	2016년	■대학	기금 부교수	AY	(주)□□	328,513,800	46,277,070	미보고	미납	46,277,070
2		□대학원	교수	AZ	(주)▲▲	99,999,996	11,999,999	보고	일부 납부	999,999
3		□대학원	교수	BA	▲▲	60,450,000	9,067,500	보고	일부 납부	1,827,500
4		■대학	교수	BB	(주)□□	193,225,806	25,983,871	보고	일부 납부	10,983,871
5		■대학	교수	BC	☉☉	46,666,666	4,000,000	미보고	일부 납부	400,000
6		□대학원	교수	BD	(주)●●	54,200,000	5,130,000	미보고	일부 납부	130,000
7		□대학원	교수	BD	(주)◐◑	48,000,000	4,200,000	미보고	미납	4,200,000
8		공과대학	교수	BE	◑◑	56,337,947	5,450,692	미보고	미납	5,450,692
9	2017년	■대학	교수	BC	☉☉	46,666,666	4,000,000	보고	일부 납부	1,000,000
10		■대학	교수	BF	▲▲	37,228,440	2,584,266	보고	미납	2,584,266
11		□대학원	교수	AZ	▲▲	99,999,996	11,999,999	보고	일부 납부	8,399,999
12		▲대학	교수	BG	▲▲	66,000,000	6,900,000	미보고	미납	6,900,000
13		■대학	교수	BH	▼▼	24,000,000	600,000	미보고	미납	600,000
14		■대학	교수	BI	▼▼	120,000,000	15,000,000	미보고	미납	15,000,000
15		▲대학	교수	BJ	☉☉	59,740,000	5,961,000	미보고	미납	5,961,000

주: 1. 2018. 10. 24. 현재 기준,

2. 2018. 12. 28. 현재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출연금을 미납한 겸직교원 12명 중 11명은 미납액 106,374,397원의 납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명은 미납액 4,340,000원을 5회(2018년 12월 ~ 2019년 4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고 2018. 12. 26. 약정하여 미납에 대한 시정이 완료됨

3. ■대학 ●교수 AY는 2018. 12. 1. 의원면직, □대학원 교수 BD는 2017. 8. 31. 정년퇴직, ■대학 교수 BE는 2016. 8. 31. 정년퇴직, ▲대학 교수 BG은 2018. 8. 31. 명예퇴직을 함

자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